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69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연구기관, 대학, 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의 바이오·의료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바이오·의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의료 앵커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여 2016년 7월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나. 최근 증가하는 바이오·의료 기업들의 입주공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릉일대 시유지 활용 및 민간건물 임차를 통한 추가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사전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10,058 m^2)/ 동대문구 회기로 117-3, 舊 농촌경제연구원
- 구)경희대학교 이과대학(1,890 m^2) / 동대문구 회기로 1-5
- 거산프라자 신관(3,562 m^2)/ 성북구 종암동 30번지
- BT-IT 융합센터(2,986 m^2) /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2, 舊 서울국방벤처센터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7.~'23.7.)
- 위탁형태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안) : 2020년 예산편성 중 ※'19년 편성예산 : 3,75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공모)
- 주요 위탁사무
 -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기업 발굴·유치
 - 바이오 의료 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홍릉일대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 바이오·의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기업 입주공간, 장비 등 시설 설치·관리, 홍보, 기타 정책사업

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19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1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5조 및 제1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편성예산 활용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거점성장추진단 바이오정책팀 최철영 (☎2133-8734)

□ 참고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1

제54조의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29.]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5조 및 제18조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